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비매품/무료
13370
9 791197 193675
ISBN 979-11-971936-7-5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대전광역시교육청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교육청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강원도교육청 Ga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충청남도교육청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경성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22년 /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2022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2022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일러두기

본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
유권해석 내용, 교육부 지침 등을
현장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 입니다.

Contents

Ⅰ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8
2장 사안처리 흐름도 10
3장 사전 예방활동 12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4

Ⅱ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16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18
2. 신고 및 접수 20
3. 학교의 대응 요령 24

2장 사안조사 30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30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32
3.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37
4. 긴급조치 40
5. 학생 및 보호자 상담 42

Ⅲ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46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49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50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52
1. 관계회복 52
2. 분쟁조정 55

Ⅳ 조치결정 및 이행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58
1.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0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65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66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68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68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72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77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80
1. 기재 및 기재유보 80
2. 기재내용 삭제 82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84
1. 행정심판 84
2. 행정소송 86

참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 87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안 88

부록

1. 각종 양식 90
2.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113
3.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126
4.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128

I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2장 사안처리 흐름도

3장 사전 예방활동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본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법률'로 표기함.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표기하기로 함.

용어 정의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 유예의 경우에는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함.
  ※ 이후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음.
  ※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 개념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상황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부록 2]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113쪽 참조)
사이버 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유의사항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교육부 「2022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가이드북」에 따라 운영)

2장 사안처리 흐름도

사전예방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 또래활동, 체육·예술활동 등 예방활동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

관계회복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

사후지도

- 피해학생 적응 지도
- 가해학생 선도
- 주변학생 교육
- 재발방지 노력

초기대응

- 인지·감지 노력
  - 징후 파악
  -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
- 신고접수
  - 신고접수 대장 기록
  - 학교장 보고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 교육청 보고
- 초기개입
  - 관련학생 안전조치
  - 보호자 연락
  - 폭력 유형별 초기대응

사안조사

- 긴급조치(필요시)
  - 피해학생 보호
  - 가해학생 선도
- 사안조사
  - 사안조사
  - 보호자 면담
  - 사안보고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

요건 충족/동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심의·의결
  - 분쟁조정
- 교육장 조치결정
  - 학교장 통보
  - 피해·가해학생 서면통보

조치 이행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선도조치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

3장 사전 예방활동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 ·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법률 제15조).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한다(법률 제14조제5항). 다만,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3항).
-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제3호).

대 상	횟수	방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제2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제4호)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시행령 제17조제5호)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시행령 제17조제6호)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함.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도란도란'
www.dorandor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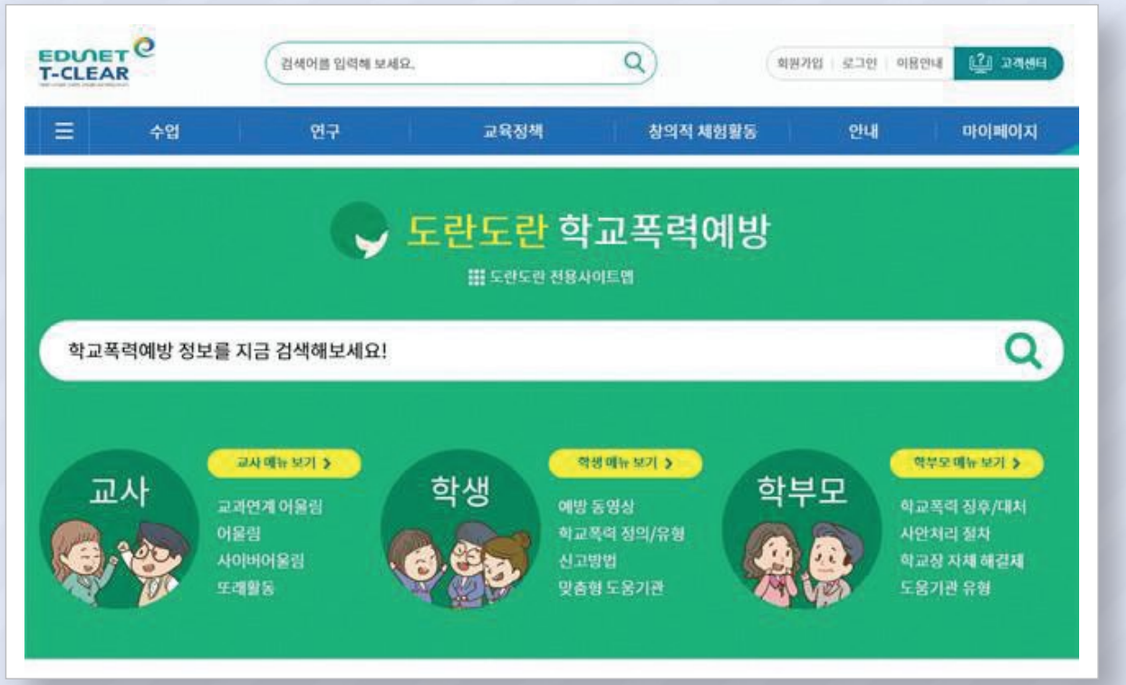

Ⅱ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2장 사안조사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초기 감지·인지의 중요성

◆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감지 :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 인지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및 방송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 학교폭력이 감지·인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법률 제20조제4항),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한다.

참고

▣ 교사의 관찰 및 조사요령

- **피해학생 관찰** : 피해학생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계회복 등 피해학생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한다.
- **가해학생 관찰** : 가해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지 혹은 다수의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 반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가해학생 간에도 힘의 우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의 역동을 살핀다.
- **주변학생 관찰** :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은 더 없는지, 학교폭력 사안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목격학생 및 주변학생들의 심리상태(불안감 등)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 **학교폭력 조사 요령** :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을 물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한다. 가해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반장, 회장 등의 학급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본다. 다수 또는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피·가해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관련 학생을 개별로 조사한다.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대답을 강요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한다.

학교폭력 감지·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유 형	내 용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학교·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교내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 문자·메일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 피해·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예방교육 시)
교사의 관찰 및 상담 실시	•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상담
교내·외 순회지도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

학교폭력 징후

◆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인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징후

* 푸른나무재단 제공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 수련회,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 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

▶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 SNS의 상태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자녀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가해학생의 징후

* 푸른나무재단 제공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
-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
- 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

2. 신고 및 접수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 **신고의무 (법률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학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해야 함

◆ **교원의 보고의무 (법률 제20조제4항)**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신고자·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 (법률 제21조제1항)**

- 교원 등은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개인정보 등)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 접수자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 접수

업무 담당자 — 신고 대장 기록
▶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업무 담당자 — 접수 보고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보호자 통보
▶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인지 후 48시간 이내)

신고방법

◆ **교내 신고방법**

-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한다.
-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

▣ 설문조사 유의사항

▶ 학생들이 설문지를 편안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설문지 작성 시, 학생들을 시험대형으로 앉게 하고, 서로 적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설문지를 반으로 접어서 내게 하고, 교사가 직접 회수하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다.

▶ 비밀을 보장한다.

- 설문결과가 피해 및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교사는 비밀을 꼭 지킨다.

-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

※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이 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함.

-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 **휴대전화**
  -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 **포스터 부착**
  -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외 신고방법

- **112 경찰청**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범죄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One-Stop 또는 NGO 단체 연계 업무를 한다.
  -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참고

▣ 비밀보장

▶ 왜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을까?

- 첫째,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고 사실을 가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이 물어도 끝까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 둘째,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비밀보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

-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인지·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등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신고자에 대한 대처 방법

◆ 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

폭력 피해 징후를 보호자가 먼저 알아채고 학교로 알려왔을 때,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기**
  - 학교폭력 사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원한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준다.
-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 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

[신고자가 피해학생일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피해학생의 상태 파악과 신변보호**
  -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정서적 상태도 확인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 **해결자로서의 역할**
  -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된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 **상담자로서의 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많이 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주면 좋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신고자가 주변학생일 때]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신고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주어야 하는가?

- **신고 행동 칭찬과 협력관계 구축**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 **다른 목격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지도하기**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

3. 학교의 대응 요령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순서

학교폭력 사안발생 ▶ 관련학생 안전조치 ▶ 보호자 연락 →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의 사안조사 / 피해·가해학생 상담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참고

▣ 외부기관 연계

▶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자원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기 초 각 학교에서는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세울 때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즉시 신고, 폭력서클 연계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 주요 지원체제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전화로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하며, 24시간 운영함.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
- 위(Wee)프로젝트 :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상담 지원
  위(Wee)클래스(학교단위) - 위(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 - 위(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의 위기, 학교폭력 등의 상담, 신고 전화
- 푸른나무재단(1588-9128) : 학교폭력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학교폭력SOS지원단에서는 화해·분쟁조정지원, 사안처리 진행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

◆ **주요 대상별 초기대응 요령**

피해학생 조치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한다.

가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보호자 조치

-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린다.
-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연락하고,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확히 알려준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귀가했을 경우, 학생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특히 피해학생인 경우, 보호자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다.

목격학생 · 주변학생 조치

-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주변학생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킨다.
- 사안에 관련된 학생 및 목격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한다.
-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신체폭력**

-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들(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 보건교사 역할 :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여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 119(응급의료센터)란?

· 병원의 의료진 및 병상, 의료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안내함
· 구급차 출동, 시도 권역별 설치, 전문상담요원과 상담 의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응급처치 지도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장 등 관리자
· 보호자 연락 :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 병원 이송 시 동승 · 사안조사에 협조	· 교감 : 상황 파악, 지시 · 책임교사 :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 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동승, 차량 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 전문상담교사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또는 가해학생 대상 초기 상담	·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주력

◆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 피해학생 조치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도록 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 가해학생 조치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한다.
-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금품갈취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 피해학생 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한다.
-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금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 방임·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돕는다.

◆ 강요 · 강제적 심부름

-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한다.

• 학생의 행동 감지

다음과 같은 행동 변화가 있을 경우 학생을 불러서 상담하고 보호자에게도 확인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
-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준다.

• 피해학생 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한다.
- 당분간 보호자가 등·하교 길에 동행한다.

• 가해학생 조치

- 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따돌림

-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 2차 피해 주의하기

-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에게' 혹은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 신고를 두려워하는 피해학생 돕기

-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학생을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처벌을 반대하면 아래의 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된다.
-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이 멈춘다.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 함께 만나지 않게 하기

- 피해 및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따돌린 학생 다수와 따돌림 받은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을 한다.

- **피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능력이 뒤쳐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

◆ 사이버폭력

- **평소 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하도록 지도한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하도록 안내한다.

- **피해학생 조치**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

-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 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은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한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나,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다.

- **피해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 **피해학생 조치**
  -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 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한다.

방과 후 학교폭력 대응 요령

◆ **근무시간 종료 후 교사가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며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여 필요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 상대방의 신원 정보(교복, 명찰, 생김새 등 기억)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알린다.
- 사안이 긴급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성폭력 등의 경우에 몸을 씻지 말고 그대로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한다.
- 방과 후 학교폭력 발생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알린다. 신고 다음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교사는 피해 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린다.
- 학교소속 및 학교급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학생이 있는 학교의 전담기구 소속교사와 연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후 조치한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학교급) 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사안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안이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하다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협조를 요청한다.
- 학원 등 외부 기관(단체, 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안 발생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2장 사안조사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구성권자 :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 이어야 한다.

※ 담임교사를 포함한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한다.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한다.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한다.

◆ **교육(지원)청 보고**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식1-2>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
-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학교전담경찰관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 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사안조사 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위 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양식2-4>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다.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 심의
-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 **학교폭력 실태조사**

-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학교장은 법률 제14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

- 조사 책임자 : 학교장
- 조사 담당자 :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

사안의 '발생 - 조사 - 보고' 진행 과정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처리내용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신고 접수 및 학교장·교육청 보고 등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양식1-1>에 반드시 기록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양식1-2> • 신고 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양식1-3>
▼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필요 시 피해 및 가해학생 즉시 격리. 가해학생이 눈빛 · 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 · 119 신고 · 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 · 심리적 안정 등) •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폭력인 경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 · 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가능〈양식2–3〉
▼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양식2–1〉, 〈양식2–2〉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양식2–4〉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1〉 –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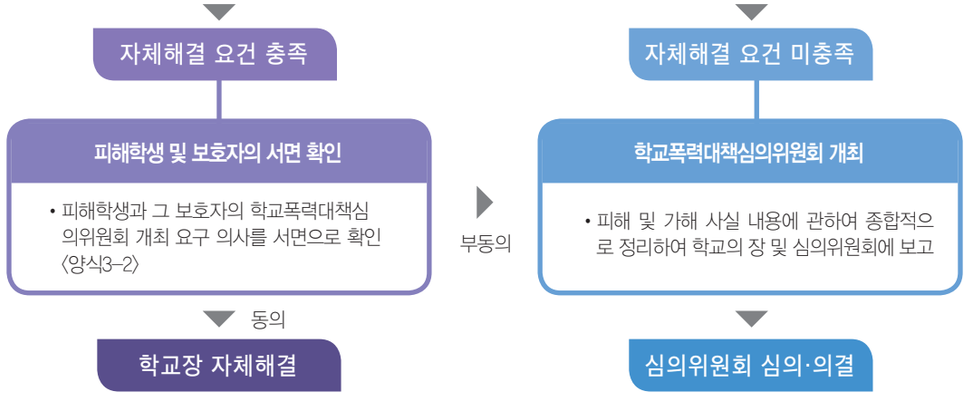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수 있음.

참고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처리

▶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예시)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처리

- 학교장이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단,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음.

참고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의 처리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사안조사 절차(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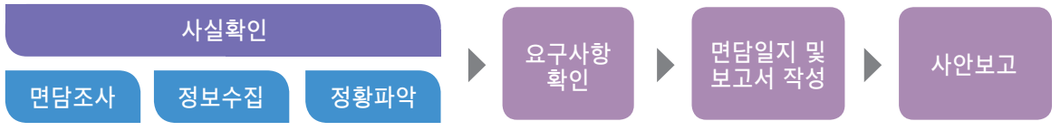

참고

▣ 전담기구 사안조사 시 유의 사항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 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사실 확인

- (확인서)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설문조사) 피해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온라인 상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참고

▣ 사실 확인 시 진위 파악 원칙

- **(면담결과와 관련 정보의 일치)** 피해 및 가해측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주변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 **(피해·가해학생의 상호 인정)** 면담조사 결과를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이 상호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 **(진술 맥락의 일관성 파악)** 언급한 진술에서 문맥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 살핀다.
- **(목격자 확인)** 면담조사 결과와 목격 학생의 확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 **(정황증거 파악)** 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면담 조사]

- 면담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 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해당학생의 눈맞춤, 눈빛, 손 떨림, 목소리 크기 및 높낮이 등을 통해 학생의 불안, 분노, 우울 등을 파악한다.
  - 위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심리검사 또는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학생들이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
-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가급적 대면 면담을 활용하고, 서면조사 활용 시 한국어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조사지의 활용 및 모국어 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한다.
- 면담조사 시 면담내용의 녹취는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학생 및 보호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 면담 시 전문가 활용

-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교육지원청 소속 위(Wee) 센터의 상담사, 특수교육 전문가 및 전문상담 순회교사 지원 요청
- 푸른나무재단(1588-91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상담전문가 지원 요청
- 초기 위기 진단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및 학교 인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소 등 전문가 활용(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력 파악, 업무지원 협조 협약 체결 등)
- 시·도교육청 등에 다문화학생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담사가 상주하는 경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면담 시 활용

[정보 수집]

- (피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피해학생 수, 교우관계, 장애 유무, 평소 학교생활, 특이사항 등
- (가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학생 수, 가해 동기, 장애유무, 다른 피해자 및 유사 사안의 관련 유무 등
- (폭력 유형 및 형태) 폭력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 폭력형태(집단폭력, 일대일 폭력 등), 발생 및 지속기간(1회적 · 지속적 사안),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 정도, 진단서 발급 유무 등

[정황 파악]

-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파악 : 대처능력, 적응능력 등을 파악한다.
- 피해학생(보호자 포함)의 현재까지의 대처상황을 확인한다.
- 가해학생(보호자 포함)의 대응방법 및 태도를 파악한다.
- (힘의 불균형 파악) 관련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 지 파악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은 물리적인 체격·체력은 물론, 언어·표정·심리적 표현 및 인간관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괴롭힘의 대상이 된 아이가 교실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느낀다면, 특히 그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집단폭행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요구사항 확인

-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 피해·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재발 방지 요구(설문조사) 등을 확인한다.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 (면담일지 작성) 관련학생, 보호자, 담임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면담일지에 기록한다(교무수첩 등 활용 가능).
- (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진위 여부의 판단 및 확정)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다른 여타 상황에서 사실로 파악이 가능하면 확인된 사실로서 사안조사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다.
- (양측 주장 모두 기록) 사안조사 내용 중 피해 및 가해학생의 첨예한 의견 대립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록할 수도 있다.

참고

▣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개 유의사항

- 면담일지나 보고서는 직접적인 정보공개 대상은 아니다(법 제21조제1항). 다만, 사안관련 민원이나 쟁송 발생 시 학교 및 교사의 사안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면담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안 보고

◆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사안조사 중점 파악 요소

◆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 유형	중점 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 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참고

▣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 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제1항)**

- 분리의 취지
  -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함.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분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 인지(접수)	분리방법 결정 * 24시간 이내 처리	가해자 분리
· 피해학생에게 반대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 <양식 1-2>	·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 결정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음 ※ 가해학생 교육방법 운영 • 가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3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된다.**

- 가해자와의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참고

▣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참고

▣ 유의사항

- 학교는 가해자 분리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위(Wee)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한 경우, 분리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4. 긴급조치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초 · 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 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 일시 보호(2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제6호 예시 :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 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 범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21조).**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시행령 제21조제2항).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는다.
-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한 후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한 경우,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 기간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결석 기간을 출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내부 결재 시행)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참고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시 조치 사항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
- 우선 출석정지 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석정지 기간 중 위(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한다.

5. 학생 및 보호자 상담

학생 상담

-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한다.
-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학생 상담 또는 조사 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가해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탈북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피해학생 상담]

-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 피해 상황과 요구를 파악한다.
-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관리할 것을 인지시켜 준다.
- 사안처리 절차(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 과정, 준비 사항(확인서, 증거자료 등),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준다.

[가해학생 상담]

-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 조사과정에서 학생을 낙인찍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결론이 나거나 피해 및 가해학생이 뒤바뀌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가정적 요인 포함)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 가해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준다.
- 추후에 가해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재발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가해학생이 가해행동에 대해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를 희망하는 경우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목격학생 상담]

-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서에 쓰도록 한다.
-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위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한다.

보호자 상담

-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 등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알린다.
-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한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으나 본인 자녀의 확인서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을 알린다.
-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문화학생(중도입국학생, 외국인학생 등)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

▣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처

-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 경찰신고(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선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 피해 및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한다.

-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 확인된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피해 측이 가해 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 입회 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외부기관의 상담이나 지원(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피해학생 학부모 위로 상담가, 푸른나무재단의 화해·분쟁조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예 시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1. 피해사실의 확인 단계

- **학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한다.**
  (학생의 학교폭력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학생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나요? / 혹시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친구가 있나요?)
- **학생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 질문한다.** (00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2. 감정의 이해 단계

-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걱정이 되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3. 사안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 단계

-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앞으로 이 일이 심의위원회에 회부가(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린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 과정에서 00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4. 신뢰구축 단계

- **학생의 보호와 안전,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00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 보호자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한다.

-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준다.
-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 가해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예 시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1. 감정의 이해 단계

-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학생의 가해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

2. 신고내용 및 상대학생의 피해사실 고지 단계

- **신고내용 및 상대학생의 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안내한다.**

3. 사안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 단계

-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4. 화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조언 단계

- **궁극적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두 학생 모두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해학생 보호자의 경우에 자신의 자녀가 피해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가해 측에서 피해학생의 신체적 ·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해학생이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Ⅲ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함.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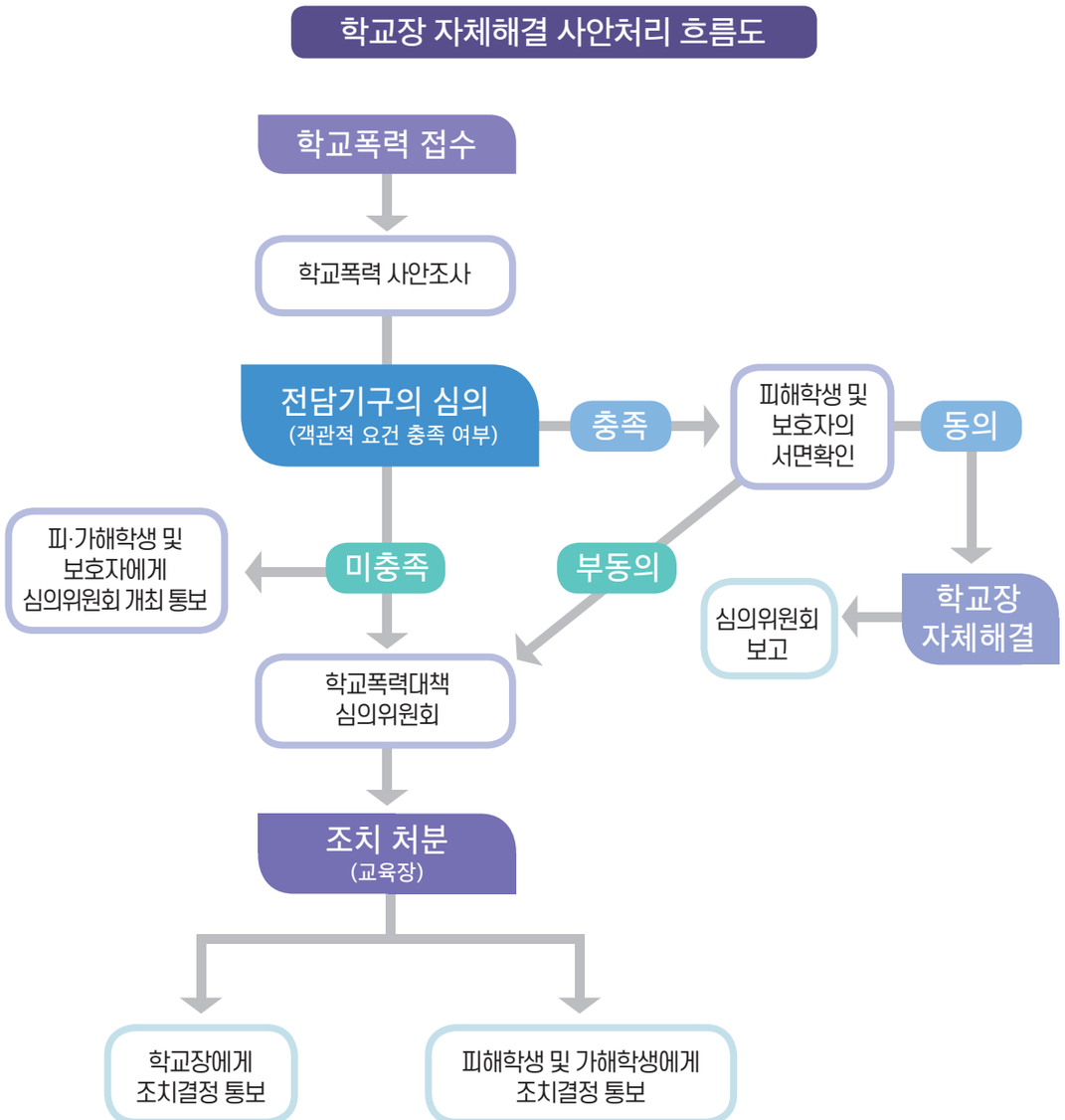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전담기구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학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양식3-4>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학교장은 요청서<양식 3-4>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담기구 심의 시 유의사항**
-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단,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한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양식2-4>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양식 3-1>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양식3-2>를 첨부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양식3-3>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후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서면, 유선, 문자 등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담당 교사(상담교사·교감)의 상담,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1) 사안조사, 2) 전담기구 심의,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4)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 법률 제13조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참고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며,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을 따라 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이 때,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하여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 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1. 관계회복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계회복의 개념

◆ 관계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회복의 목적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화해)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한다.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회복을 조력한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함.

운영 대상 및 방법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측)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사전 개별면담 :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한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직접대면 및 소통) :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을 하도록 조력한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함.

관계회복의 운영 주체

◆ 학교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사안에 대한 내용 및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학교의 사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교사에게 역할을 배정하되 아래의 역할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예시안

교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교감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
담임교사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책임교사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상담교사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 푸른나무재단 제공

참고

▣ 관계회복 진행 시 유의사항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한 명이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학교 및 교사는 사전에 가급적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로 소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안내한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학교 및 일상생활과 또래와의 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안내한다.
• 피해학생에 대하여 모든 단계 시작 시 현재 마음과 생각, 2차 피해(재발 및 보복 등),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함으로써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피해학생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 푸른나무재단 제공

▣ 관계회복 진행 시 면담 Tip

① 피해상황에 있는 학생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 학생의 각각의 사안과 상태에 따라 개별 맞춤형 접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면담 시 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 피해 학생 스스로 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돕는다.
- 심리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일 경우 필요에 따라 전문 상담을 연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가족(보호자 및 형제 등)의 상태나 상황, 조력하고 도울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 이에 대한 개입도 함께 할 수 있다.

"힘들고 속상했겠어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피해 상황은 절대 우리 친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② 가해행동을 한 학생

-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반드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 폭력을 왜 가하게 되었는지, 이들이 폭력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다양한 요인들을 면밀히 탐색하는 것이 이후 사안의 해결이나 2차적인 가해행동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 행위에 대한 일방적 평가나 훈계는 가해 학생에게 저항, 반발심, 무기력 등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하거나 심문조의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OO학생도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OO학생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은 사안처리를 갈음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 대신 진행하여 조치 변경 또는 경감 등의 조건부로 진행할 수 없음.

2. 분쟁조정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 ·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 ·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 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분쟁조정의 개념

◆ 분쟁조정이란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한다.

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1항, 제6항, 제7항).

◆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4항).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 학교 각 3주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음(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사업, 02-598-1640).

분쟁조정의 대상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법률 제18조제3항)**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당사자(피해 및 가해측)가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서(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양식 5-1>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분쟁조정의 기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법률 제18조제2항).

분쟁조정의 관할권

◆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동일한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일 경우 :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한다.
-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일 경우 :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통보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의 통보**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합의서 작성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대상의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1항).

◆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제2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고려될 수 있음.

Ⅳ

조치결정 및 이행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 ·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 · 검사 · 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지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법률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의 권한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1항).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률 제13조 제4항)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4항)

※ 법률 개정에 따라 ’21.6.23.부터 피해학생 의견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발생

심의방식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대면 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안내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도록 피해 및 가해학생의 대기실을 분리 운영한다.

◆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교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원 출석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성 사안과 사이버 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 제5항).

심의기간

◆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함.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심의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청

◆ 법률 제13조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 표명 →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양식3-5)'를 첨부하여 보고 → 교육지원청은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심의위원회 소집	심의위원회 준비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제출서류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등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교원의 출석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

※ 공문 발송 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첨부서류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양식3-1>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2-4>
- 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양식2-1>
- 보호자 확인서 <양식2-2>
- (피해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양식2-3>
-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양식2-5>
- 기타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

◆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 (영상)통화,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다.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피해 및 가해측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 관련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가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

-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 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 등을 피해 및 가해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장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은 조치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 이때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법률 제19조제1항).

◆ **학교장의 조치이행 결과 보고**

- 학교장은 가해측이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법률 제19조제3항).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한다 (보고 방법 및 시기는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참고

▣ 피해학생 조치 시 안내할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시도교육청 별도 안내)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6조제3항)

◆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2호 :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참고

▣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6항).
- 지원 범위(시행령 제18조)

구분		내용	인정가능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집행 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호 :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5호 : 기존 전학권고 조치는 삭제됨.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시행령 제73조제6항, 시행령 제89조제5항) 해당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 성폭력 범죄에 의한 피해학생의 전학요청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배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때 배정된 학교장은 전학을 거부할 수 없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

◆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

◆ 출석일수 산입 : 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4항).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

◆ 불이익 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16조제5항),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2). 따라서 장애관련 비하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사안처리 과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또는 장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범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 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사항**

1)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1)에서 특수교육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다문화·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탈북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켜 다문화학생(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또는 탈북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관련법률및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이행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의위원회가 제1호, 제3호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조치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조치이행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병원 입원, 소년원 입소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법률 제17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조치 및 제17조제3항의 부가조치는 시간 단위로 결정한다.
  -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8항).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한다. 단, 학교의 장이 성폭력 등 피·가해학생 분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참 고

▣ 접촉 등 금지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심의위원회에서 제2호 '접촉 등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급의 졸업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가 유효하다.
- '접촉'의 범위 :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참 고

▣ 학교에서의 봉사

-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가해학생에게 학교 내의 화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지도교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 고

▣ 사회 봉사

-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참 고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가해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 **제6호 :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함.
  ※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제7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 **제8호 :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학 처분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조치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4항).

◆ **제9호 : 퇴학처분**
-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퇴학 처분 시 학교의 장의 조치사항
-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시행령 제23조제2항)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11항).

▶ 조치시일 및 이수 기간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조치 후	14일 이내	교육장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 가해학생
		•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	•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 조치 미이행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 및 시기는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 교육장(심의위원회)은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해당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치(법 제17조제1항제1호 조치 제외)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보고) 학교장 → 교육장(심의위원회)	21일 이내	(안내) 교육장(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 미이행 가해학생 명단 보고		• 1개월 이내 이행 서면 안내

참고

▣ 학교장의 긴급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7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퇴학처분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된다.

- 법률 제1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제3항). 이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여부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3항)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제9항).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률 제23조, 시행령 제35조).

▶ 조치시일 및 이수 기간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심의위원회 조치 후	▶ 14일 이내	교육장 → 보호자	학교장 → 보호자
		•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	•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이수하도록 시간 및 장소 안내

▶ 조치 미이수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과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서면으로 안내한다.

보호자 조치 불응/ 미이수	▶ 조치 후 3개월 다음날	학교장 → 시 · 도교육감	▶ 14일 이내	시 · 도교육감 → 보호자
		• 해당 보호자 명단 통보		• 1개월 이내 참여 서면안내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시·도교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
  - 시·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한다.
  -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 보호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60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제기 가능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참고

▣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 운영 원칙
  - 기관 특성·폭력사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가해 유형별 사례 관리 및 추수 관리
    ※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원적교와 협력하여 상담의 효과성 제고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 대면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범위(보호자 타 시·도 거주 등)에서 온라인 원격연수 방식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능
  - 자녀의 심리상태 이해 등을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의 개인상담시 학생과 함께 또는 별도 실시 가능
  - 개인 상담 실시 : 특별교육에 일정 시간 부과 및 필요 시 추가 가능
    ※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 교육 내용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 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학부모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시간 부과 기준

교육 대상 처분	이수시간	교육 운영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및 개인상담 이수	보호자·학생 공동교육 가능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 이상		

- 특별교육 기관 선정
  - 교육청은 전국 시·도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위(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 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푸른나무재단, 평화여성회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선정하고 학부모에게 안내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1. 기재 및 기재유보

관련법률및시행령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 학생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 · 내용 등. 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3. 출결상황 :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상황 :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신설 2020. 2. 28.>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인적 · 학적사항)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상황)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구체적인 작성 ·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한다.
-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동시에 부과한 경우 동시에 부과된 조치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한다.
-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는다.
- 조치결정 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한다.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고 조치사항만 수정함(유예, 자퇴 등 학업중단자 포함).
- 학적이 정지된 자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전학년의 경우 정정대장을 통해 기록한다. 학적이 정지된 자가 복교할 당시 중복기간 동안 해당 학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조치 사항이 입력된 내용은 유지한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해당 학생이 학적 변동 시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은 전입한 학교에서 관리 보유한다. 이에, 학적 변동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의 관리 보유도 동일하게 적용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다.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학적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2. 기재내용 삭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 · 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 · 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 제1호~제3호, 제7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6호, 제8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표와 같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시기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제4호(사회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삭제 대상 아님
제9호(퇴학)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시 유의사항

◆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함.

◆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4호·제5호·제6호·제8호는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심의 대상자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제7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참고 제출자료: 담임교사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 자기의견서 등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 행정심판

관련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관련법률및시행령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행정심판의 대상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집행정지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 심판의 절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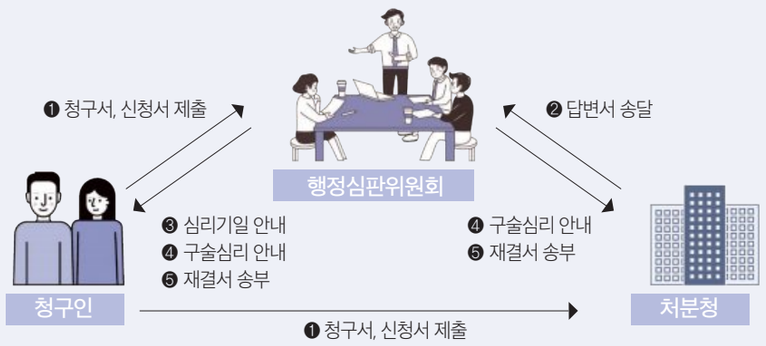

2) 2018.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rk 참조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개념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참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처리 절차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진다.

■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은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 민사절차에서는 형사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제도가 없다. 따라서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및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1/5로 비교적 저렴하게 든다.
- 각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 **민사책임의 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이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안 |

▣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주요 내용

■ **기본 원칙**

- **감염증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 이용 및 집합 제한 등은 정부의 코로나19대응지침(중대본)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조치**
  *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교육부),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등),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교육부) 등
  * 사안 조사 및 심의회 운영 등 사안처리 절차 진행 시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
  * 감염증 예방 및 대응을 최우선으로 조치하되, 학교폭력 피 가해학생의 기본적 진술 기회 및 보호받을 권리 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세부 방안**

사안조사 단계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 입원 치료 또는 격리 등으로 인해 진술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를 유예하고, 회복상태를 고려하여 사안 조사 실시**
- **코로나19 의심 증상 또는 확진자 접촉으로 피·가해학생이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의사 표현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영상,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사안조사 실시**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라 전교생이 등교 중지된 경우 : 등교중지 기간 동안* 사안조사는 미실시하고 해제 이후에 사안조사 개시**
  * 시설 이용 제한 조치 통보일부터 시설 이용 제한 해제 통보일까지

참고 : 대상자별 사안처리 조치 사항

대상	조치 사항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을 사안조사 기간에서 제외	• 입원치료통지서
가족(동거인)이나 본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 기회 부여	• 격리통지서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 기회 부여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사안 심의 단계

- **(심의위원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심의회를 정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른 심의회 운영방법 변경을 검토**
  - 회의실 내 방역 강화 조치*를 우선 시행
    * 마스크 상시 착용, 방역 물품 구비, 개인 간 거리 이격 또는 칸막이 설치, 창문 수시 개방 등
  - 상황 발생 시 회의 공간과 참석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장 승인 후 **대면회의 방식을 화상회의 등으로 변경 운영**
    ※ 예시 :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심의위원과 관련 학생, 참고인 등을 분리 배치하여 영상회의 접속 추진 등
    ※ 피·가해학생 측의 진술이 위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음성·영상 등 정상적 작동 장치 사전 준비
    ※ 공동심의위원회는 주관하는 교육지원청에서 회의 방식 등 운영 방법 결정
-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나 의심증상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참석중단 안내 조치**
- **피·가해학생측이 확진 또는 의심증상으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심의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서면, 영상 등)을 강구하고,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치결정 유보 등 대응**
-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체 소위원회 운영 등의 방안 마련**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회의실 건물 전체가 일정기간 폐쇄될 경우에는 화상회의 실시 또는 대체시설 마련 운영**
-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특정 시기(학기 또는 분기 등)에 일괄 보고할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조치이행 단계

- **교내 외 이용 시설 등의 밀집도 및 밀접 접촉 최소화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치이행 추진**
-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등교 중지 등으로 인해 관련 학생의 조치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치료 종료' 및 '자가격리 해제', '등교 중지 해제' 이후에 조치를 이행**
  ※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학교는 내부결재 후 교육지원청에 조치이행 기간 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지원청은 승인
- **단위학교에서는 전담관리인*으로 지정된 교직원이 매일 유선으로 대상 학생의 건강 상태 확인 등 관리**
  *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교육부, '20.7)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한 전담관리인
- **학교장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 외부 위탁 기관에서 이행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에 대해 안전 확보 여부 사전 검토 실시**
- **단, 학교장은 조치이행을 위한 외부 기관 참여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사회봉사(가해학생 조치 4호) 및 특별교육(가해학생 조치 5호 및 부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장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프로그램의 학교 내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코로나19 상황에 외부기관 참여 협조가 불가 또는 어려울 경우)한다는 내용을 소속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장은 조치 이행 변경 사항을 내부결재 후 시행
  ※ 학교장은 운영 변경 시에도 조치의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교내봉사와 구별되는 방안을 강구(예시, 교내봉사와 차별화된 봉사활동 마련, 별도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초빙 등)하고, 내실있는 특별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피 · 가해학생 측에 충분한 설명 실시

■ **협조 사항**

- **동 방안을 토대로 시·도교육청은 지역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항을 결정 운영**
- **동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적용 중단**
- **사안처리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변동에 대해 피·가해학생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안내**
  ※ 변경된 절차 적용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이며, 관련 증빙자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교육부, '20.6월)'에 따라 제출 의무화되어 있음.

부록

1. 각종 양식
2.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3.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4.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신고 및 접수

1-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1-2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의사 확인서
1-3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2. 사안조사

2-1 학생 확인서
2-2 보호자 확인서
2-3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2-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2-5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

3. 학교장 자체해결제

3-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3-2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3-3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3-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보호자)
3-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보호자)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4-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4-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5. 분쟁조정

5-1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1-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 ( )학교

사안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연락처) 또는 신고기관	신고내용	접수 사실 통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작성자 (책임 교사)
				피해관련 학생/ 보호자	가해관련 학생/ 보호자		
2022-1						*분리 시행*	
2022-2						*분리 미시행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2022-3							

[참고] 사안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학교여건에 따라 교감 전결 가능 (단,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양식 1-2>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희망, 반대)**합니다.

2022　년　　월　　일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OO학교장 귀중

<양식 1-3>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학교명		**교감**	**성명**		**담당자 (책임교사)**	**성명**	
			휴대전화			**휴대전화**	
접수 일시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신고자 (성명, 신분)	*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				**접수·인지 경로**	* 피해자 직접신고 * 담임, 보호자 신고 * 주변 학생 신고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분리 시행**			**분리 예외(사유)**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따라 가해자와 즉시분리함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신고·인지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접수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관련학생	**성명**	**학교명**	**성별**	**학번**	**보호자 통보 여부**	**비고 (가해(관련) / 피해(관련) / 장애학생 / 다문화학생)**

기타 사항	(고소, 소송 여부 등) * 성관련 사안의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112, 또는 117) 신고(신고 일시 기재)	
타학교 관련 여부	관련학교명	* 신고 접수 시 타학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통보 여부	(통보 일시, 방법) (통보 받은 사람)　　(연락처)

[참고]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48시간 이내 보고)

<양식 2-1>

학생 확인서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연락처	학생		보호자		
관련학생					
사안 내용		※ 피해 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필요한 도움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양식 2-2>

보호자 확인서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1.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 인지 경위					
현재 자녀의 상태		신체적 - 정신적 -			
자녀 관련 정보	교우 관계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최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도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녀 확인 내용	(사안에 대해 자녀가 보호자에게 말한 것)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특이점, 성격 등)			
현재 보호자의 심정		(어려운 점 등)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바라는 점		(보호자가 파악한 자녀의 요구사항 등)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양식 2-3>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대상학생	학년 / 반		성명	
사안 개요 (조치원인)	※ 접수한 사안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재			
조치 내용	피해학생	조치 사항		
		법적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가해학생	조치 사항		
		법적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조치일자	년　　월　　일			
긴급 조치의 필요성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청취 여부	① 의견청취 완료 (일시: _____ , 방법: _____) ②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 출석정지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임			
관련학생 및 보호자 통지	통지일자			
	통지방법			
	작성자 : 확인자 :　　학교장			

[참고]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거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는 법률 제17조제4항에 의거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함

<양식 2-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접수 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 연락처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 반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양식 2-4>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객관적 요건(4가지) 충족 여부(O/X)**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자체해결 동의 여부 (O/X)**
	※ 4가지 요건 :▲ 진단서 미제출함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함 ▲ 지속적이지 않음 ▲ 보복행위가 아님	

<양식 2-4>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 작성날짜 포함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	
	주요 쟁점 2.	※ 위와 동일	근거자료 ※ 작성날짜 포함
	…	…	…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학교는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양식 2-4>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참고]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 의거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 결재 후 심의위원회 보고

2.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확인 시 참고 사항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판단사항	작성 시 참고 사항
1. 심각성 판단 요소	성폭력인지 여부, 폭행·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인지, 피해학생의 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폭력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등
2. 지속성 판단 요소	전담기구 심의결과, 해당 학교폭력이 지속된 기간 및 횟수
3. 고의성 판단 요소	이전에 피해학생과 마찰이 있었는지, 비슷한 행동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모이게 된 이유, 만류가 있음에도 행사한 것인지, 교사의 지도가 있음에도 그렇게 행동했는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는지 등
4. 반성 정도 판단 요소	전담기구 조사 협조 여부, 사안접수 이후의 태도 변화, 확인된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
5. 화해 정도 판단 요소	고소·고발 여부, 화해가 되었는지,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화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갈등조정 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
6.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판단 요소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평소의 생활 태도, 사안접수 이후의 태도 변화, 해당조치로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한지 등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장애유형(영역) 및 정도 등

<양식 2-5>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연번	사안번호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우편번호) 주 소

[참고]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시,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식 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

○○중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경유)
제목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1. 관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나. ○○○○학교-○○○○(2022.00.00.)호 *(※관련 내부공문)*

2.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학교 사안번호	비고
피해학생	○○중학교	3-1	○○○	○○중 2022-1	예시
가해학생	○○중학교	3-1	○○○	○○중 2022-1	예시
가해학생	○○고등학교	1-2	○○○	○○고 2022-2	예시

붙임 1. 피해·가해학생 확인서 ○부.
2. 보호자 확인서 ○부.
3. 목격학생 확인서 ○부.
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1부.
5.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부.
6.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부.
7.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우편번호, 주소,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휴대폰번호 등)
8.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끝.

<양식3-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석자 : ○○○ ○○○ ○○○ ○○○
○○○ ○○○ ○○○ ○○○

4. 심의 주제 : 사안번호 2000-00호 ( )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5. 심의 내용
※ 전담기구 사안 조사 내용
•
•
•
•
•

※ 필수 확인 사항
•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판단하여 해당 여부 체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해당 여부 (O, X)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6. 결정 사항
•
•

<양식 3-2>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피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조사 내용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위 사안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학생:　　(인)

피해학생 보호자:　　(인)

OO학교장 귀중

<양식 3-3>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피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조사 내용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합의된 결과를 기록 (예 : 객관적 요건(4가지) 충족 여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여부, 양자 간에 화해, 가해학생의 사과와 피해학생의 용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등의 내용)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2000.00.00

OO학교장

<양식 3-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보호자)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신청사유	(예시)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00.00.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참고] 해당 요청서는 학교장이 접수하여 개최 요구 공문에 첨부함

<양식 3-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보호자)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취소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합니다.

2000.00.00.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참고] 해당 요청서는 학교장이 접수하여 개최 요구 취소 공문에 첨부함

<양식 4-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2000학년도 입학생)

인적사항				조치 일자	졸업 예정일(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유보 조치 포함)	졸업 2년 후 삭제 사항	
학년	반	번호	성명				전담기구 심의 사항 (제4호,제5호, 제6호, 제8호)	삭제 시기(월)
6	1		A	2022.3.12	2023. 2	제3호		
6	1		A	2022.6.23	2023. 2	제1호 제2호 제3호		
6	1		A	2022.8.4.	2023. 2	제2호 제5호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제5호는 심의 대상 아님)	2025 2.
6	4		B	2022.12.12.	2023. 2	제1호 제7호 (제1호 기재유보)		

※ 보존기간 : 졸업 후 2년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대장에 기재
※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련 내용을 송부

<양식 4-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2000학년도 입학생)

인적사항				조치일자 (이행기간)	조치사항	이행 완료일	비고
학년	반	번호	성명				
3	1	25	김삿갓	2022.4.5. (2022.00.00)	제1호	2022.00.00.	
3	~~2~~		홍길동	~~2022.5.12.~~ ~~(2022.00.00)~~	제3호	~~2022.00.00.~~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음

※ 조치일자는 교육장 내부결재일(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통보함)
※ 조치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란에 취소선을 그음

※ 보존기간: 졸업학년도 2월말에 폐기

[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기재하지 않음.**
- **다만,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함.**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됨.**

<양식 5-1>

분쟁조정 신청서

* 사안번호: (　　)학교　2022-(　)호

학 생	성명	(남 / 여)				
	주소					
	소속	학교　　학년　　반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유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Ⅰ.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사람은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성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의미함.

◆ 한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폭력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개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함

2. 관련 개념

◆ (**성희롱**)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

신체적 성희롱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 그림 · 낙서 ·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 사진 ·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

◆ (**성폭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포함

3. 성폭력의 유형

▣ 행위 유형별 분류

유형	내용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행위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심신상실(장애, 수면, 술에 취함, 의식 잃음) 또는 항거불능(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성희롱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동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스토킹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사이버성폭력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법률상 분류

법률명	행위유형	비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제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제9, 10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4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17조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
	특수강간 등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제8, 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4조의3
	제3조~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미수범	제15조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제301조 제301조의2
	미성년자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
	강도강간	제339조
	제339조의 미수범	제342조

4. 성폭력 예방 교육

▣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예방 교육		
학생	학부모	교원
●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실시 ● 다양한 특성화 교육 실시 ● 학생활동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학기별 1회) ● 학부모 상담주간 활용 상담	● 폭력예방 교육 실시(년1회)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 ● 담당 교원 및 보건교사 연수

※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 제고**

Ⅱ. 성폭력 사안의 신고

1. 성폭력 사안 신고

▣ 성범죄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 「초 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만 19세 미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교직원이 관련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징계령」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권보호, 징계 및 조치가 이루어짐.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성폭력 사안처리 교직원의 유의사항

◆ 성범죄에 해당되는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교직원이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학교장은 교내 성고충 상담원(보건교사 등)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를 긴급보호 조치 하고, ① 117 신고센터, ②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1899-3075), ③ ONE-STOP 지원센터, ④ 여성긴급전화(1366), ⑤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학생이 비밀유지를 하도록 주지시킨다. 만약 비밀을 유출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교직원이 개인상담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안 경우,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법률상 신고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 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또한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 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 대상: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 청소년 • 내용: 법률정보 및 상담 안내 • 현황: 광역자치단체 시도단위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해바라기 아동센터	• 대상: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 내용: 의료지원(성폭력 외상치료, 심리상담, 심리치료, 놀이치료) 법률지원(법적절차 지원, 피해자 조사지원) 상담지원(사례접수, 면담조사, 연계지원서비스, 가족상담) • 현황: 서울,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경기, 충북, 전북, 경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1899-3075)	•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 내용: 의료지원(응급처치, 산부인과진료, 정신과진료, 기타 외상치료) 수사지원(피해자조서작성, 진술녹화지원, 증거채취, 고소지원) 상담법률지원(사례접수 및 관리, 24시간응급상담, 법적자문) 심리지원(심리학적 평가, 심리치료, 부모 및 가족치료) • 현황: 서울, 부산, 울산, 강원(2), 전남, 경북
ONE-STOP지원센터	•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청소년 • 내용: 의료지원(응급처치, 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진료, 기타 외상치료) 상담법률지원(사례접수 및 관리, 24시간 응급상담, 법적자문) 수사지원(피해자 조서작성, 진술녹화지원, 증거채취, 고소지원) • 현황: 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2), 광주(1), 대전(1), 경기(3),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1), 경남(1), 제주(1)
여성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청소년 • 내용: 긴급구조 및 보호를 위한 전화상담 안내(365일 24시간 상담) • 현황: 광역자치단체 시도단위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대상: 성폭력 피해 청소년 • 내용: 의료지원 연계(응급처치, 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진료, 외상치료) 상담법률지원 연계(사례접수 및 관리, 24시간 응급상담, 법적자문) 수사연계 지원(진술녹화 동행지원, 고소 지원) • 현황: 서울(20(3)), 부산(6(1)), 대구(4), 인천(7(2)), 광주(11(1)), 대전(5(1)), 울산(4(1)), 세종(1), 경기(37(4)), 강원(6), 충북(7(1)), 충남(10(2)), 전북(12(2)), 전남(10(1)), 경북(16(2)), 경남(14(1)), 제주(3(1))

(2021년 2월 현재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67조(과태료)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 · 징수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비밀누설 금지

▣ 비밀준수 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은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같은 법 제34조제3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65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밀준수 의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역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력 관련 비밀누설금지 위반사례

- 피해학생의 상담 녹취파일을 제3자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하여 피해학생 관련 자료 외부 유출
- 피해사실을 들어 알게 된 학생과, 피해자라고 찾아온 피해학생들에게 비밀이 보장되도록 개별상담하지 않고 집단 상담 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 · 청소년의 주소 · 성명 · 연령 · 학교 또는 직업 · 용모 등 그 아동 ·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성폭력 사안조사 및 조치

1. 사안조사

◆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안조사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사안조사 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필요 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사안 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상담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중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요청)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 유의사항

◆ 성폭력 사안 조사 시 조사자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확인·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 성폭력 사안 조사 시 조사자는 관련 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유발사례

•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 4명을 성추행한 것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학교 및 교육청에서 조사 실시 후
- 상담교사가 가해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등 부당하게 상담
- 교육청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아니지?” 등 피해학생에게 부당한 표현
- 피해학생의 상담 녹취파일을 제3자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하여 피해학생 관련 자료 외부 유출

◆ 성폭력 사안 조사 시에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처리를 한다.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음.

※ 다만,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심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함.

※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계로 대신할 수 없음.

3. 성폭력 관련학생 조치

▣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 보호(제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 받으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이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는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제73조제6항, 제89조제5항).
- 성폭력범죄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성폭력 가해학생의 교육·선도조치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에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긴급 출석정지 사유 :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사, ② 성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성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 행사, ④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 받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성폭력 피해 의심

-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하여 성폭력 사안 조사 (관련학생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등)
  - 필요시에 전문상담기관 협조 요청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1899-3075), 117,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아동), 성폭력 상담소 등)
- **상담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 **신고(수사기관)**
  - 교육, 의료, 아동복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함

피·가해학생 긴급 조치

- **피해·가해학생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 배제, 신속한 징계조치 이행)
- **응급 및 안전 조치**
  - 학교 내외 상담실(위(Wee)센터,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증거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 교사 동행, 피해학생지지
  - 친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로 연계
- **관련학생 보호자 연락 및 교육청 통보**

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 **(학교)** 상담, 사건 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청)** 단위학교 성폭력사안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 치료비 선지원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결정
- **(교육장 조치결정)** 조치 결정사항 통보
- **(학교장 조치 이행)**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재발방지 노력
- **(사후 관리)** 피·가해 학생 추수 지도, 소속 교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사안처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교 기숙사는 정규 교육과정 종료 이후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기주도적 생활능력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 환경이 가능하도록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사감, 기숙사 관리 담당교원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 학교 기숙사(생활관, 학사 등) 내 학교폭력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 학교의 장은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지체없이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생활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공간 분리를 위한 노력

※ 피·가해학생이 같은 침실 공간을 이용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가해자의 침실 공간을 분리 배치함.

※ 분리 배치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기숙사 내에서의 동선 분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함.

※ 그 밖에 침실 외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학생을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식사 장소, 숙소 층간 분리, 기숙사 내 여가시간 등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분리 노력 필요).

- 가해행위가 명확하고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시·공간 분리가 어렵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교육·선도조치를 시행하여 피해학생과의 분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피·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내 교사나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또는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6호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기숙사 침실공간 분리 배치, 피·가해학생 기숙사 내 동선 분리, 피해학생 또래 지킴이 지정 등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선도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제1호, 제2호, 3호, 5호, 제6호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호와 6호는 동시에 부과하는 조치 가능).
- 긴급조치 범위 :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교육·선도 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여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5호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참 고

▣ 학교의 기숙사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관리)** 사감의 근무수칙(순회지도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시설)** 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시설)** 남녀 학생이 구분 배치(건물, 층)되어 있으며, 출입통제가 되고 있는가?
◆ **(관리)** 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외박 관리, 외부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안)**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사안)**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 기숙사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 기숙사 운영계획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사안)**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2회 이상)을 실시하였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 · 정신적 ·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 · 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 · 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 연구 · 교육 · 계도 등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 ·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 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 · 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 ·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 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 · 검사 · 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 · 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 ·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 · 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 · 치료 · 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 · 치료 · 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2. 1. 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 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 ·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 · 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 · 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 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 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 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 ·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1. 5. 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④ 삭제 <2019. 8. 20.>

⑤ 삭제 <2019. 8. 20.>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시 ·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 ·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0.]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 운영 ·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 · 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1.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3. 23.>

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 ·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 ·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제17954호, 2021. 3. 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898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 ·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31.>

1. 해당 시 · 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 · 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 · 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해당 시 · 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 · 검사 · 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 · 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 · 도 또는 시 ·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10.>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 · 군 · 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1. 해당 시 · 군 · 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 · 군 · 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

(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 · 군 · 구의회 의원
3. 해당 시 · 군 ·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 · 검사 · 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 군 · 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 · 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 ·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 ·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 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 · 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청소년 보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 ·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 · 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 · 검사 · 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2020. 2. 25.>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 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25.]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 ·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 · 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조 삭제 <2020. 2. 25.>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 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 · 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 · 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6. 20.]

제34조 삭제 <2021. 3. 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제32018호, 2021. 9. 29.>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2.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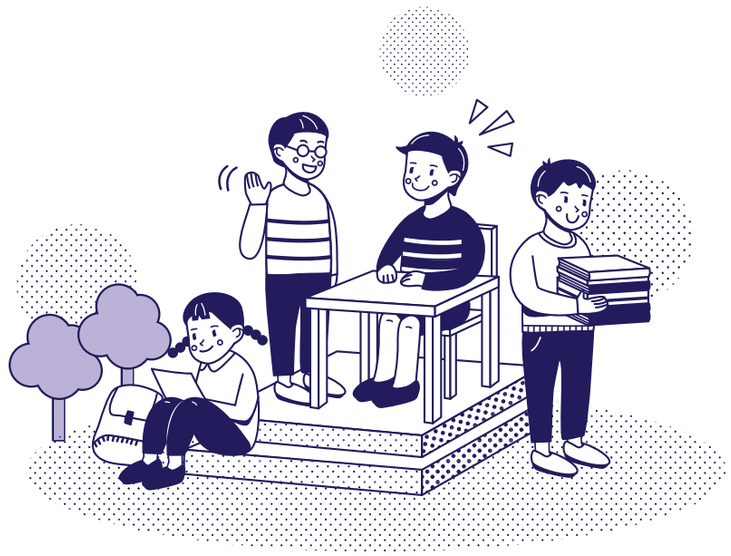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89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27호, 2020. 5. 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 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육환경 변화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연구진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윤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김경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변호사)
김희하 (충청남도교육청/변호사)
허용건 (부산광역시교육청/장학사)
박대광 (울산강남교육지원청/장학사)
현영후 (부산서부교육지원청/장학사)
김진기 (광주광역시교육청/장학사)
조일육 (인천광역시교육청/장학사)
이효석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장학사)
정재욱 (전라북도교육청/주무관)
나태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장학사)
민경준 (경기망월초등학교/교사)

검토진

유상범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과장)
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사무관)
인정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연구사)
서정현 (서울특별시교육청/장학사)
장정희 (경기도교육청/장학사)
유덕수 (충청남도교육청/장학사)
이석천 (전라남도교육청/장학사)
김형국 (대구서부교육지원청/장학사)
김의성 (대전광역시교육청/변호사)
변성숙 (경기도교육청/변호사)
안병모 (순천제일고등학교/교감)
박상호 (성신초등학교/교사)
현운석 (고대초등학교/교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발행처 | 교육부 ·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발행일 | 2022. 1. 31.
디자인 | 중앙미디어디자인 02) 751-5939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